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007 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: 박환희, 강석주, 구미경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송도호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허 훈,

몃)

홍국표, 황철규 의원(38

1. 제안이유

○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는 경우, 시장 및 교육감이 해당 조례의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, 조례와 예산을 연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함.(안 제55조의2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없음.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(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)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	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
의 제출 등) ① ~ ③ (생 략)	의 제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
	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
	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
	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
	산안(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
	다)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
	고하여야 한다.